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57호

##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「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

### 2. 제정이유

○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,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-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·성교육·성폭력 예방교육과의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비밀 유지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### 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26.

발 의 자 : 오은옥·김상현·김수혜·김우진·문순규·박해정  
백승규·서영권·성보빈·안상우·이우완·이찬수  
이해련·진형익·최은하·최정훈 의원(16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,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라.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·성교육·성폭력 예방교육과  
의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
##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 수립)**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(이하 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4.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·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
3. 스토킹 예방·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
4.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예방교육의 실시)**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·성매매·성교육 및 성폭력·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밀 유지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, 사법기관, 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스토킹행위자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스토킹 예방·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법률구조와 주거지원,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5.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7. 피해자등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·지원체계 구축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예방교육의 실시)**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)** 누구든지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수사기관의 협조)**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(지구대·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

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4조(비밀 엄수의 의무)**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5조(벌칙)**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·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스토킹행위자

## 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## ■ 여성폭력방지기본법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여성폭력"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



한 폭력 등을 말한다.

2. "여성폭력 피해자"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■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1. 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(3.~7. 생략)